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제출연월일 : 2025. 3.

제 출 자 : 정 부

재의요구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2025년 3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방송·통신 정책과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시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의 출석수를 의미하며,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하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같이 완화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행정의 계속성 원칙을

고려한 것입니다.

-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과 같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할 경우, 유고 등 여러 사유로 인한 위원 공석 상황 등을 고려 시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행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함)의 주요 소관사무 대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방통위 회의가 개의되지 못하여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주요 소관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 특히,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공익채널 선정 등 법령상 기한

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 처리할 수 없게 되고,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 시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방송·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입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현안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민생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여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는 행정권을 부여받고 있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을 국정운영의 방향을 함께할 사람들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합니다.
-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구성 및 최종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헌법 구조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 운영에 관해서는 ‘의사정족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재적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뿐인 상황이 되더라도 방통위의 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그에 따른 책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위헌을 피하는

최소한의 핵심적 장치로서 입법권으로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방통위 위원 추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의를 불가능하게 하여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국회가 추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방통위 위원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국회가 입법으로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며, 방통위 위원도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나아가 임명권의 행사 시한을 규정한 것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 추천 위원 및 보궐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위원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한에 쫓겨 고위 공직자 검증이 불충분하게 함으로써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 및 판단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 회의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준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데,

- 개정안에 따라 심의 과정을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경우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과 토론 및 판단이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명예훼손성 정보 등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부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함으로써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자율적인 운영규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심위 회의를 생중계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 방통위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하는 내용,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2008년 방통위법 제정, 한국방송공사 사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2014년 방송법 개정, 방통위 위원 결격사유 관련 2015년 방통위법 개정 등 방송 관련 주요 법안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입법안을 마련해 온 전례가 있으며, 이러한 합의 과정이야말로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이 방통위 의사체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결 론

- 이와 같이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켜 방송·통신 규제 기능의 공백을 초래하여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며,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고, 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통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를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